

의안번호	2216711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6.
추계번호	26F0810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세율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2027년 4,129.6억원, 2031년 3,462.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9,102억원(연평균 3,820.4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-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이며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지역자원시설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(안 제146조제2항제3호)	4,129.6	3,983.2	3,836.9	3,690.5	3,462.0	19,102.1	3,820.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이며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6조제2항제3호 (과세표준과 세율)	○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- 세율: (현행)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 → (개정안)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2원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46조제2항제3호 (과세표준과 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, 2026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- 화력발전의 발전량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4~2038년)에서 전망하고 있는 석탄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 화력발전량 만큼 발전한다고 가정
 - 다만, 화력 발전량 전망은 2030년 이후 2년 단위로 전망되어 전망치가 존재함으로 2024년 실적치(338.6TWh)에서 2030년, 2032년 전망치를 반영하여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5~2029년은 2024년 실적치(338.6TWh)가 2030년 전망치(271.5TWh) 기준으로 매년 11.2TWh씩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전망
 - 2031년은 2030년 전망치와 2032년 전망치(238.3TWh)의 중간치인 254.9TWh로 전년대비 16.6TWh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전망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과세실적

- (제도개요) 현행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
 -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
 - 다만, 액화천연가스 연소발전 시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(2026.1.1. 이후)
 -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2011년 0.15원에서 2015년 0.3원, 2024년 0.6원, 2026년 0.7원으로 상향 조정
 - 2026년부터는 발전연료(석탄과 액화석유가스)에 따라 세율 상이

[표 2]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변화

	~2014	2015~2023	2024~2025	2026
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 당	0.15원	0.3원	0.6원 ¹⁾	0.7원 (LNG 0.6원)

주: 1) 지방세법 제18655호(2021.12.28., 일부개정)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.3원에서 0.6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부칙에 따라 2024.1.1.일부터 시행

- 2026년 현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대상	과세표준 및 세율
컨테이너	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 5천원
원자력발전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화력발전	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 (액화천연가스 연소·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)
폐기물	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(2026.7.1. 시행)

-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세율을 현행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에서 1원으로 인상

□ (과세실적) 2024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액은 1,962억원임

- 2023년 1,051억원에 비해 910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2024년 세율이 킬로와트시(KWh) 당 0.3원에서 0.6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기인

[표 4] 최근 화력발전 과세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				
	2021	2022	2023	2024
지역자원시설세	1,023	1,063	1,051	1,96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(추계방법) 향후 전망된 화력 발전량에 세율 인상액을 반영하여 산정

- 화력발전량 전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2030년과 2032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증감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 - 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화력발전량 전망은 2030년부터 2038년까지 2년단위로 전망치 존재
 - － 2025~2029년은 2024년 실적치(338.6TWh)가 2030년 전망치(271.5TWh) 기준으로 매년 11.2TWh씩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전망
 - － 2031년은 2030년 전망치와 2032년 전망치(238.3TWh)의 중간치인 254.9TWh로 전년대비 16.6TWh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전망

[표 5] 향후 화력발전량 전망: 2025~2032년

(단위: TWh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소계	338.6	327.4	316.2	305.1	293.9	282.7	271.5	254.9	238.3
－ 석탄	171.4	161.2	151.1	140.9	130.8	120.6	110.5	106.7	102.8
－ LNG	167.2	166.2	165.1	164.1	163.1	162.0	161.0	148.3	135.5

주: 2024년 발전량(석탄+ LNG)은 실적이며, 2030년과 2032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치임
 자료: 한국전력공사, 「2024년 한국전력통계」(2025.5) 및 산업통상자원부 ‘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’(2025.3.13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전망된 향후 5년간의 화력발전량에 현행과 개정안의 세율인상 차액을 적용하여 세수증가분 산정
 - － 세율: (현행) 화력발전 킬로와트시(KWh) 당 0.7원, 단 액화석유가스사용 시 0.6원
 → (개정안) 화력발전 킬로와트시(KWh) 당 2원
- 화력발전 세율인상에 따라 2027년 4,129.6억원, 2031년 3,462.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화력발전 세율인상의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현재 세율 적용 전망(A)	1,971.1	1,893.9	1,816.7	1,739.5	1,636.1
개정안 세율 적용 전망(B)	6,100.7	5,877.1	5,653.6	5,430.0	5,098.0
세수 증가분(B-A)	4,129.6	3,983.2	3,836.9	3,690.5	3,462.0

주: 1) 현재 세율은 석탄사용 화력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7원, 액화석유가스사용 화력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2027년 4,129.6억원, 2031년 3,462.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9,102억원(연평균 3,820.4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 -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이며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지역자원시설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(안 제146조제2항제3호)	4,129.6	3,983.2	3,836.9	3,690.5	3,462.0	19,102.1	3,820.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이며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